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300-10

CHILE

2011

칠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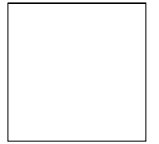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300-10

CHILE

2011

칠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머 리 말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매년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그 동안 세정간담회 등에서 우리 해외진출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무안내책자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이 증가하여 현지 세무 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세무안내책자를 증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박영준

목 차

칠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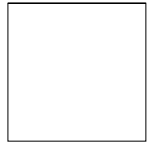
I. 칠레 개황	1
1. 국가 개요	1
2. 경제 현황	2
3. 한국과의 주요 관계	3
II. 칠레 조세 제도 및 세정현황	4
1. 일반 개요	4
2. 칠레 국세청 조직 및 기능	4
3. 칠레 조세 체계	6
3-1. 소득에 관한 조세 【Income Tax】	7
3-2.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13
3-3. 특별판매세 【Special Sales Taxes on Certain Goods】	13
3-4. 특별 목적 조세 【Specific Tax】	14
3-5. 기타 조세	14
4. 납세절차	15
4-1. 신고 납부 특징	15
4-2. 세무조사	15
4-3. 불복절차	16
4-4. 이전가격제도	17
5. 기타	18
5-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18
5-2. 영수증 발급 의무화	20

목 차

칠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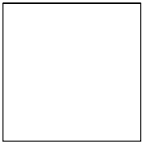
Contents

5-3. 이동식 신고·상담 센터(SII Móvil, Mobile Office)	21
5-4. 이동 최근 칠레 국세청 동향	22
III. 칠레 진출기업을 위한 투자정책	23
1. 일반 개요	23
2. 외국인 투자 현황	23
3. 칠레의 외국인 투자 정책	25
4.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26
5. 외국인 투자 절차	27
6. 투자우대조치	28
7. 투자 규제 조치	29
8. 투자 형태	30
9. 투자 형태별 설립절차	32
IV. 한-칠레 FTA 영향 및 진출전략	35
1. 일반 개요	35
2. 한-칠레 FTA 배경	35
3. 한-칠레 FTA 의의	37
4.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38
5. 칠레 투자 성공 사례 - 이견산업(주)	45
【별지1】 칠레 세무서 현황	48
【별지2】 칠레 소득 신고서 양식	51
【별지3】 칠레 무역협정 체결 현황	53



1. 국가 개요

- 수도 : 산티아고(Santiago)
- 행정구역 : 15개 주(Region), 54개 시(Provincia), 346개 구(Comuna)
- 언어 : 스페인어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임기 4년, 연임불가, 중임가능)
- 입법부 : 상·하원 양원제(상원 49석/8년, 하원 120석/4년)
- 면적 : 757천 km²(한반도 면적의 3.4배)
 - 국토 길이 4,270km, 폭 평균 180km
- 인구 : 1,725만명(남성 49.5%, 여성 50.5%)
- 인종 : 메스티소 66%, 백인 29%, 원주민 5%
- 국가원수 : 세바스티안 피네라(Sebastián Piñera) 대통령(2010.3.11 취임)
- 시차 : 한국과 12시간 (10월 3주~3월 4주 서머타임 시행 중)
- 화폐 : 칠레 페소(\$로 표기)
- 환율 : US\$ = 488.19페소(2011.9.21 기준)
- GDP : 1,950억US\$(2010년 기준)
- 1인당 국민소득 : 11,428US\$(2010년 기준)
- 수출입액 : 수출 683억US\$, 수입 528억US\$(2010년 기준)



2. 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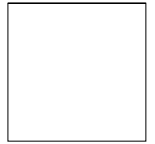
□ 거시 경제 동향

- 칠레는 1970년대부터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유지하며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구하여 중남미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음
-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및 구리 국제가격 급락 등으로 2009년 중 -1.5% 마이너스 성장율을 나타내었으나, 그 이전에는 4.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었음
- 2010년 강진으로 위기상황을 맞았으나, 구리 국제가격 상승 및 지진복구를 위한 재정지출 증대 등으로 5.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 시장 특성¹⁾

- 원료 조달이 용이하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가공품 제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완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
- 구매력을 갖춘 소비층 대부분이 수도 산티아고 부근에 거주하여 수도권에 시장이 집중되어 있으며, 극단적인 빈부 격차로 수요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

1) 칠레 경제 및 무역 동향, Kotra 산티아고 KBC, 2011.1



3. 한국과의 주요 관계

□ 한-칠레 FTA

- 한-칠레 FTA는 1999년 12월 협상을 개시한 후 2002년 10월 타결되었으며, 2003년 2월 공식 서명되어 2004년 4월 1일 발효됨
-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초 FTA를 발효한 상대국이었으며, 칠레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FTA를 발효한 국가임
- FTA 발효 이후 칠레 교역 증가율은 28.2%, 수출 증가율은 33.9%, 수입 증가율은 26.8%로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칠레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이어 5위 (시장점유율 6.41%)를 차지하는 등 칠레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으며, 인접한 페루, 콜롬비아 등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액이 동반 상승하여 중남미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큼

□ 교민 현황 : 한국교민은 약 2,500명(2010년 기준)

- 수도 산티아고에 주로 거주하며 FTA 이후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음

II

칠레 조세 제도 및 세정현황

1. 일반 개요

- 칠레 국세청은 조세부과와 징수 업무가 분리되어 있으며, 신고·납부 제도에 있어 일부 우리나라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
- 최근 칠레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회피 방지 및 세무조사 강화 등에 세정 운영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칠레 진출기업의 주의가 요구됨

2. 칠레 국세청 조직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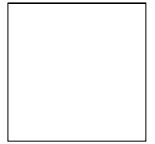
□ 특징

- 칠레는 우리나라와 달리 조세부과 업무와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며, 조세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SII(The Internal Revenue Service)를 통상 국세청으로 부르고 있음

칠레의 조세행정기관

기 관 명	업 무
The SII	세법의 해석, 조사, 신고, 조세절차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담당
The Treasury	SII와 Customs이 결정한 조세를 징수하는 업무 담당
Customs	관세 관련 업무 담당

- 칠레 국세청은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 관할에 속한 기구로서 국세청장(Commissioner, 현재 국세청장은 Mr. Julio Pereira)은 대통령이 지명함



□ 조직

- 칠레 국세청은 본청(Headquarters-*Dirección Nacional*), 18개 지방청(Regional Taxation Office), 64개 세무서(Local Office)²⁾, 1개 LBO(the Large Business Office)로 구성되어 있음
- 본청은 조사(Inspection and Audit), 법규(Interpretation of Tax Law), 인사(Human Resource), 전산관리(Information Technology), 자산평가(Real Estate Appraisal), 통계(Surveying and Statistics), 법무(Legal), 감사(Internal Audit and Administration)의 총9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음
- 칠레 국세청 공무원 수는 약 4,259명임

□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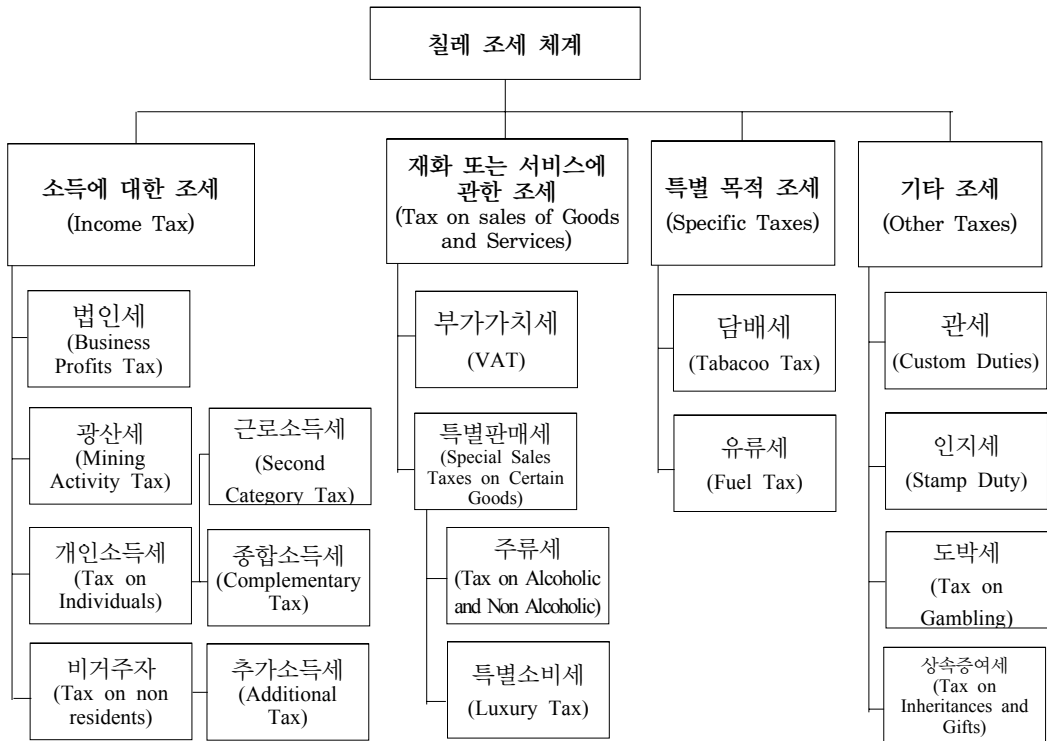
- 칠레 세법 해석 및 집행
- 납세자에 대한 조사
- 납세 협력비용 축소 및 신고절차 간소화
- 전자신고 활성화 및 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

2) 64개 세무서 현황은 별지로 첨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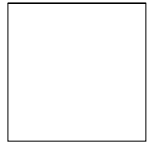
3. 칠레 조세 체계

□ 개요

- 칠레의 조세 체계는 크게 ①소득에 대한 조세, ②재화 또는 서비스에 관한 조세, ③특별 목적 조세, ④기타 조세로 분류할 수 있음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단일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의 50%이상이며,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칠레의 세수 현황

(단위 : 백만US\$,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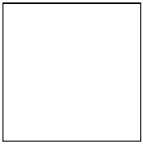
연도	금액			비중			GDP 대비 비중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소득에 관한 조세	13,790	12,389	8,106	44.6	39.3	34.0	8.4	7.3	5.2
부가가치세	12,980	15,148	12,600	41.9	48.0	52.8	7.9	8.9	8.1
담배세와 유류세	2,488	2,227	2,218	8.0	7.1	9.3	1.5	1.3	1.4
인지세	935	963	112	3.0	3.1	0.5	0.6	0.6	0.1
관세	575	588	291	1.9	1.9	1.2	0.4	0.3	0.2
기타	173	215	522	0.6	0.7	2.2	0.1	0.1	0.3
합 계	30,941	31,530	23,850	100.0	100.0	100.0	18.9	18.6	15.3

* 자료 : 칠레국세청

3-1. 소득에 관한 조세 【Income Tax】

□ 개요

- 거주자는 칠레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발생
 - 칠레에 영구적 생활 영역을 갖추고 활동하는 자 또는 1년에 6개월이상 칠레에 거주하거나 2년에 걸쳐 6개월이상 칠레에 거주하는 자는 거주자로 간주
- 비거주자는 칠레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발생
- 칠레 이민자의 경우, 통상 이민 후 첫 3년간은 칠레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짐
- 소득에 관한 조세는 법인세(Business Profits Tax), 광산세(Mining Activity Tax), 근로소득세(Tax on employment), 종합소득세(Complementary Global Tax), 추가소득세(Additional Tax)로 나누어짐



- First Category Tax (FCT, Business Profit Tax, 1종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납세의무자 : 모든 법인, 법인지점, 외국회사의 고정사업장
 - 과세 대상 : 상업, 광업, 산업, 기타 자본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
 - 세 율 : 20% 단일세율 적용³⁾
 - 과세 방법 :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함
 - 신고납부기한 : 다음 해 4월 말

- Mining Activity Tax(광산세)
 - 납세의무자 : 광물을 채굴하고 판매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
 - 과세 대상 : 광물 채굴로 인해 획득한 소득
 - 세 율 :

과 세 표 준*	세 율
12,000 미만	0
12,000 ~ 50,000	0.5% ~ 4.5%
50,000 초과	5%

* 과세표준은 순동의 톤수 가치를 의미하며, 순동 가치는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의 평균 가치에 의해 계산함

- Second Category Tax (SCT, Tax on income from dependant employment, 2종 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
 - 납세의무자 : 칠레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근로소득자
 - 과세 대상 :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상여, 수당 등 대가로서 월 급여가 13.5 UTM(Unidad Tributaria Month)⁴⁾ 이상인 경우
 - 과세 표준 : 총급여액에서 사회보장비용을 공제한 금액

3) 2010년까지는 세율이 17%이었으나, 2011년 2월부터 법인세율이 20%로 인상되었음. 2012년에는 18.5%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2013년에는 다시 17%로 인하될 예정임. 세율인상은 2010년 2월 발생한 칠레대지진 피해 복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 세율 인상임.

4) UTM(Unidad Tributaria Month)은 칠레에서 쓰는 매월 조세단위임. UTM은 2종 소득세 부과를 위한 기준 단위로서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국세청에서 매달 고시하고 있음



○ 세 율 : 0%~40% 초과누진세율 적용

(단위 : 매월, UTM)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0 ~ 13.5	0	70 ~ 90	25
13.5 ~ 30	5	90 ~ 120	32
30 ~ 50	10	120 ~ 150	37
50 ~ 70	15	150 ~	40

* 자료 : 칠레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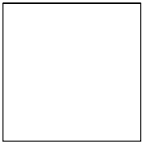
○ 2종 소득세 적용 UTM

UTM/폐소화 환산액			
2011년	금액(페소)	물가지수	달러환산액(US\$)
1월	37,643	102.76	76.2
2월	37,681	102.98	80.3
3월	37,794	103.77	78.4
4월	37,870	103.98	80.6

* 자료 : 칠레국세청

2종 소득세 계산 사례

'11. 4월 총급여액	500,000 페소 가정 (약 1,064\$)	550,000 페소 가정 (약 1,170 \$)
UTM 환산액 (과세표준)	13.2 UTM (=500,000÷37,870)	14.52 UTM (=550,000÷37,870)
세 율	0 %	5 %
산출세액	0	0.051 UTM (=(14.52-13.5)×5%)
산출세액 환산액		1,931.37페소 (≒4US\$)



○ 기타사항

- 근로자는 매달 총급여액에 대해 원천징수함
- 사업주 1인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는 각각의 사업주로부터 받은 수입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다음해 4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 1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기타의 소득이 없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음
- 독립된 전문직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는 납부세액 보다 초과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환급신청 가능함

□ Complementary Global Tax (CGT, Personal Tax, 종합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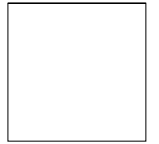
- 납세의무자 : 칠레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 과세대상 : 국내외 발생원천 소득이 13.5 UTA(Unidad Tributaria Annual)⁵⁾을 초과하는 경우
- 세 율 : 0%~40% 초과누진세율 적용

(단위 : UTA, %)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0 ~ 13.5	0	70 ~ 90	25
13.5 ~ 30	5	90 ~ 120	32
30 ~ 50	10	120 ~ 150	37
50 ~ 70	15	150 ~	40

* 자료 : 칠레국세청

5) UTA(Unidad Tributaria Annual)은 칠레에서 쓰는 연간 조세단위로 물가상승을 등을 반영하여 매년 칠레 국세청에서 고시함. 1UTA는 2010년 기준으로 451,260 페소(달러 환산액은 960불 정도)임.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연간 소득이 약 13,000US\$를 초과하는 개인에게 부과됨.



○ 종합소득세 적용 UTA 단위

UTA/폐소화 환산액		달러환산액(US\$)
연 도	금 액 (폐소)	
2010	451,260	960.13
2009	442,356	941.18
2008	451,824	961.33
2007	410,664	873.75
2006	386,472	822.28

* 자료 : 칠레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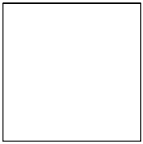
- 기타사항 : 2종 소득세(SCT)는 매달 총급여액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하나 종합소득세(CGT)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

□ Additional Tax (추가소득세)

- 납세의무자 : 비거주자(개인 또는 법인)
- 과세 대상 : 칠레기업, 공동출자형태의 개인기업, 칠레 내 고정사업장⁶⁾으로
부터 받은 이익과 배당
- 세 율 : 일반적으로 35%이나 특별한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과세 방법 :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
- 기타사항 : Additional Tax 계산시 칠레는 우리나라 세법과 같이 이중과세
조정(Gross-up⁷⁾)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6) ①Public companies limited by shares(*sociedad anónima*), ②Companies with share capital (SPA), ③Private companies formed by partners(*soiedad de personas*), ④Permanent establishment

7) Gross-up제도(또는 Imputation 제도) :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다시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 성격이 있음.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Gross-up제도(또는 Imputation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Gross-up제도는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또는 귀속 법인세)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귀속법인세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는 방식임(所法 17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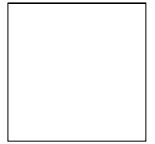
Additional Tax 계산 사례

	구 분	금 액
법인 단계	Profit in Chile (수익)	1,000
	First Category Tax (20), 법인세율	<u>(200)</u>
	Distributed profits (배당가능 이익)	<u>800</u>
주주 단계	Distribution to non-residents (배당 수익)	800
	FCT to be added back to gross up income (귀속법인세)	<u>200</u>
	Additional Tax base (과세표준)	<u>1,000</u>
	Additional Tax rate (35%, 세율)	350
	FCT credit (배당세액공제)	<u>(200)</u>
	Tax to be paid on distribution (납부세액)	<u>150</u>

칠레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
배당소득, 지분 또는 저작권, 일반적인 이자	35%
법적요건을 갖춘 외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의 이자	4%
상표권, 로열티	30%
특허권	15%
소프트웨어	15%
영상물, 영화	20%
지적재산권	15%
엔지니어링 및 기술지원 서비스 자금 송금액	15%
해외선박 임대료	20%
리스, 해외 제공 용역 대가	35%
과학, 기술, 문화, 스포츠 활동으로 얻는 수입	20%

* 자료 : 칠레국세청



3-2.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는 칠레의 중요 세목임
- 납세의무자 : 개인, 법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과세 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및 건설회사의 부동산 판매시, 재화 또는 용역의 수입
- 기타사항
 - 부가가치세는 다음달 12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산출방식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
 -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함
 - 수출하는 제품 및 수출용원자재 등은 면세임

3-3. 특별판매세 【Special Sales Taxes on Certain Goods】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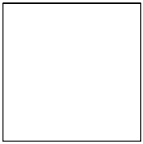
- 특별판매세는 주류, 음료수, 사치품의 판매 및 수입에 대해 부과
- 부가가치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며, 동일 과세표준을 적용함

□ 주류세 (Tax on alcoholic and non-alcoholic beverages and similar products)

- 알코올 도수에 따라 15%~27% 세율을 적용
- 알코올 음료는 피스코(*Pisco*, 칠레 전통주), 위스키, 포도주, 맥주 등 포함
- 비알코올 음료는 13% 세율을 적용
- 단, 소매상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에는 주류세가 비과세

□ 특별소비세 (Luxury Tax)

- 부가가치세에 별도로 15% 추가되어 과세됨
- 금, 보석류, 모피, 상아, 백금 등은 거래단계마다 특별소비세가 부과
-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최초 수입 또는 판매 단계에서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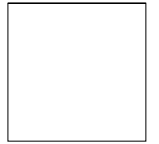
3-4. 특별 목적 조세 【Specific Tax】

- 담배세 (Tobacco Tax)
 - 담배세는 담배 제품별로 세율이 다름
 - 세율은 최종판매가격에 62.3%⁸⁾를 적용함
- 유류세 (Fuel Tax)
 - 수입 휘발유 및 경유의 최초 판매시 부과됨

3-5. 기타 조세

- 인지세 (Stamp tax)
 - 과세표준에 0.05%~0.6% 세율을 적용함
- 상속세 및 증여세 (Tax on Inheritance and Donations)
 - 누진세율을 적용함
 - 상속(증여) 가액, 상속(증여) 목적 및 친족 여부에 따라 부과방법이 다름
 -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 도박세 또는 카지노세 (Tax on Gambling or Casinos)
 - 카지노업체는 총수입의 20%를 납부하여야 함

8) 담배 한 상자 단위를 기준으로 한 세율임, 담배 종류별로 세율이 세분화 되어 있음



4. 납세절차

4-1. 신고 납부 특징

- 신고 납부⁹⁾

구분	소득에 관한 조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1~12.31	매월 1일~말일
신고·납부기한	다음해 4월말까지	다음달 12일까지
제출서식	서식22호(Formulario 22)	서식29호(Formulario 29)

*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소득을 매달 신고 납부¹⁰⁾(*pago provisional mensual-PPM*)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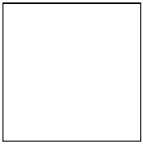
- 추가소득세(Additional Tax)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달 12일까지 서식50호(*Formulario 50*) 작성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4-2. 세무조사

□ 세무조사 절차

- 칠레 국세청은 세무 조사시 납세자에게 사전 세무조사통지서(*Notificación*)를 발송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함
- 1차 세무조사통지서에 의해 자료 미제출시, 칠레 국세청은 2차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에 다시 불응할 경우 법원에 자료 제출을 위한 영장을 청구함
- 법원 영장에 의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경우 15일 이내 구금에 처함

9)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는 다음 사업연도 3월말,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말,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기한일로부터 25일이내(법인은 예정신고기한일로부터 25일이내), 원천징수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10) 매달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또는 중간예납 성격으로서 신고납부하며, 납부한 금액은 다음해 4월에 실시하는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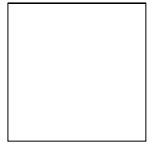
□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 칠레 국세청이 납세자 신고사항에 대해 부정확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납세자는 자진 수정신고서(*Rectificatoria*)를 제출할 수 있으며, 미수정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안내문(*Citación*)이 발송됨
- 소명안내문에 대해서는 통상 1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함
- 소명안내문에 대해 미소명하거나 소명자료로 탈루 혐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칠레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서(*Liquidación*)을 발송함
-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산출세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계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조세위원회(SII Tax Tribunal)¹¹⁾ 또는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과세예고통지서 상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칠레 국세청은 고지서(*Orden de Giro*)를 발송함

4-3. 불복절차

- 납세자는 칠레 국세청의 과세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기한은 부과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함
- 1차 청구기관은 국세청 조세위원회(SII Tax Tribunal), 2차 청구기관은 행정 법원(The court of Appeal), 3차 청구기관은 대법원(Supreme Court)임

11) 칠레 조세위원회(SII Tax Tribunal)는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과 같이 국세청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칠레 각 지방국세청 내에 존재하는 조직임.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접목한 형태임



4-4. 이전가격제도

□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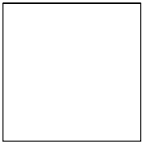
다국적기업의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 상품과 서비스 공급, 기술이전 등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국외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제도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내 용
재판매가격방법	비특수관계자에게 그 자산을 재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에서 통상적 이윤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
원가가산방법	제조, 판매 또는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통상의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
비교가능 제3자가격방법	비특수관계자간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된 가격에서 적정 이윤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

□ 국외 특수 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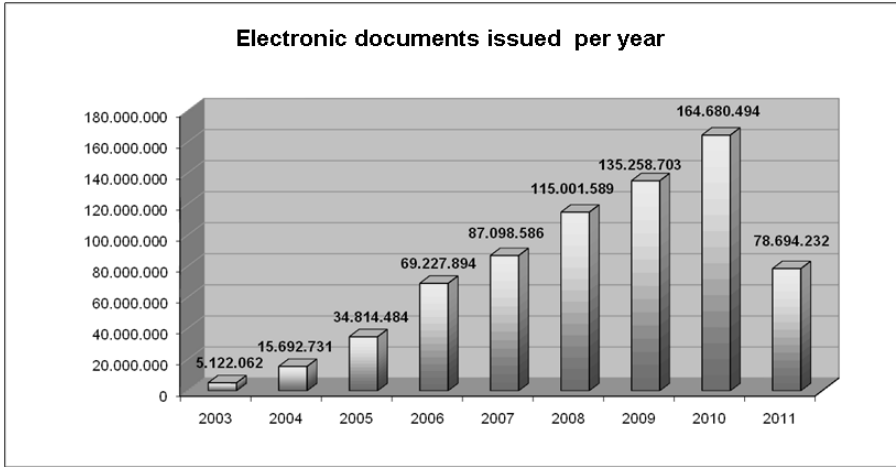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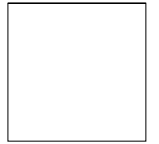
- 칠레 내국 법인의 경영, 자금, 출자 등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외국 법인의 경영, 자금, 출자 등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칠레 내국 법인 또는 개인
- 특수 관계자간 거래로 추정하는 경우
 - 독점적 계약 체결한 법인간의 거래
 - 조세피난처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
 - 합작투자계약 법인간의 거래
 - 특별우대 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
 - 재무적 또는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 등



5. 기타

5-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칠레 국세청은 2003년 9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의무 발행이 아닌 자율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연혁
 - 2002. 1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 2003. 9.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공식 시행
 - 2004. 4. 공공기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2005. 10. 내국신용장 제출 납세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영세사업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Portal MIPYME SII) 보급
- 칠레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미발행·미교부 등에 대해 가산세 규정은 없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납세자수는 2011년 기준 36,283업체이며, 중소·영세 납세자를 위해 칠레국세청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Portal MIPYME SII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납세자가 80%를 차지하고 있음
- Portal MIPYME SII 보급률은 높으나, 대기업 등이 민간프로그램을 통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체 발행 건수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부분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영세납세자의 발행 비율은 저조한 편임
- 2003년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식 도입된 이후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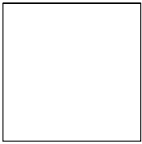


* 자료 : 칠레 국세청

- 수동세금계산서 이용자는 칠레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칠레국세청 인증 확인 도장을 받아야하며, 세금계산서마다 고유번호(FOLIO)가 부여되어 있어 각 등록번호 별로 발행내역이 칠레국세청 전산자료에 등록되어짐



* 사진 : 세금계산서 Stamping 기계 및 인증 확인을 받기 위해 지방청·세무서 방문



○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전자세금계산서			송신번호		
등록번호	111-11-11119	종사양장번호	등록번호	101-03-93144	종사양장번호
상호(법인명)	(주)파킹칠레푸드팩킹	성명	성명(법인명)	인위 유무	미켓 CASE
사업장주소	서훈택영시 서초구 번포동 939번지 302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대표자	
업태	금융업	종목	기타금융(국채)	업태	제조
이메일	123@nabe.com	이메일	1@chol.com	종목	서비스
이메일		이메일	2@dam.net	서비스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령사유		
2010/09/06	500,000	50,000			
비고					
발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09	06				
					공급가액
					500,000
					세액
					50,000
					비고
합계금액	현금	수표	예금	외생매수금	이 금액의(%)별
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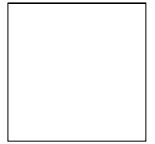
본 인쇄물은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 시스템에서 발행 또는 전송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행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e세로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Chile Export@		RUT: 78.549.580-6	
PRODUCTOS DEL MAR Y ALIMENTICIOS		GUÍA DE DESPACHO ELECTRÓNICA	
Del Valde 419 - San Antonio - Fono/Fax: 05201375		N° 057	
verano@chileport.cl		S.L.L. - SAN ANTONIO	
SEÑORES : PACKING CHILE		FECHA EMISIÓN : 20/09/2005	
DIRECCIÓN : LOS PACKING 345		RUT: 71.505.580-K	
COMUNA : SAN ANTONIO		CIUDAD: VALPO	
DIRECCIÓN DESTINO: LOS PACKING 345		CAMION PATENTE: ZZ-0300	
COMUNA DESTINO: SAN ANTONIO		NOMBRE CHOFER: MAURICIO PEREZ	
TIPO		TRASLADO NO VENTA	
Cód		Cantidad	Detalle
0304.1061	6.000 KG	FILETE SALMON	6.000
		ABINADO	
Valor Unitario		Valor Total	
		36.000.000	
MONTO NETO S		36.000.000	
IVA 19%		6.840.000	
MONTO TOTAL		4.28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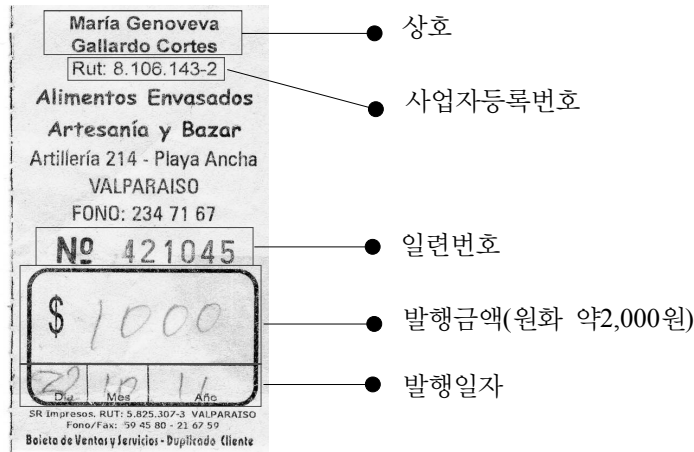
* 좌측 : 우리나라 전자세금계산서, 우측 : 칠레 전자세금계산서

5-2. 영수증 발급 의무화

- 칠레는 신용도가 높은 자에 한해서만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신용카드 이용률이 낮고 현금거래분이 많으나, 현금거래분에 대해 영수증을 필수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및 소액 현금거래 등에도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
- 영수증은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고의적 매출누락이나 편법적인 조작이 불가함
- 소비자의 영수증 수취를 장려하기 위해 발급된 영수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복권제도와 같이 추첨을 통해 각종 경품을 주고 있음
- 칠레국세청은 암행조사관(국세청 직원으로 일반 손님을 가장하여 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함)을 통해 영수증 발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음
- 미발급 적발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및 구금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납세자의 영수증 발급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영수증 양식〉



5-3. 이동식 신고·상담 센터(SII Móvil, Mobile Office)

- 칠레 국세청은 영세·중소사업자, 원거리납세자 및 직장근로자 등의 원활한 신고 업무 및 상담 업무 등을 위해 인터넷 시설 등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식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함
- 이동식 신고·상담 센터(SII Móvil)는 각종 신고 업무 및 납세자 교육, 상담,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SII Móvil 차량은 전국적으로 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인증 기계(stamping machine) 1대, 무선인터넷 사용가능 노트북 2대, 프린터 1대, 각종 신고서식이 구비되어 있으며, 3~4명의 국세청 직원이 탑승하여 운행하고 있음
- SII Móvil은 방문지역 및 일정이 칠레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각 지역 언론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사전 안내가 이루어짐
- 2010년 칠레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무너진 세무서를 대신하여 해당 지역에 SII Móvil을 상주시키고 피해 업체의 신고 업무 및 세정지원업무를 실시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함
- SII Móvil 활용 실적(2011. 1월~8월)

- 방문 횟수(활동 횟수) : 369회
- 이용 납세자수 : 14,208명



* 좌측 : SII Móvil 차량, 우측 : SII Móvil를 통한 신고·상담

5-4. 이동 최근 칠레 국세청 동향

부가가치세 회피 방지 강화

- 현 칠레 국세청장(Jilio Peteira)은 2011년 개최된 「2010 Official Account Address」에서 칠레 국세청의 2010년 세정 결과 발표와 함께 2011년 칠레 국세청의 주요 업무로서 부가가치세 회피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및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 방지를 위한 전략 구축 등을 강조함
- 부가가치세는 칠레 세수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칠레 국세청의 중요 세원 중에 하나이며, 매달 신고되는 부가가치세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교차(crosschecking) 방법과 효과적인 세무조사 기법 강화 등으로 칠레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할 업무로 소개되고 있어 진출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함



Ⅲ 칠레 진출기업을 위한 투자정책

1. 일반 개요

- 칠레는 정치·사회 안정성 및 개방적인 경제 구조 등으로 해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임
- 또한 칠레는 56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GDP의 59.6%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운영에 있어 정부 차원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음
- 칠레는 내·외국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DL 600)에 의해 일부 세제 지원을 하고 있음
- 칠레 국가 신용 등급(2010년 기준)

	Fitch	Standard & Poors	Moody's	국가별 부패지수*
칠레	A	A+	A1	21위 (7.2)
한국	A+	A-	A1	39위 (5.4)

* 국가별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 투명성이 높고, 부패가 적음을 의미함.

2. 외국인 투자 현황

- 외국인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인 투자는 칠레 경제 성장 및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함
- 지속적인 개방 정책 및 사회 안정 등으로 외국인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한해 50억US\$를 기록함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 백만US\$)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1974~2009 누계	
신고기준	1,701	4,816	2,959	10,492	6,285	120,361	
투자 기준	투자자본	1,646	2,067	1,293	4,516	2,352	56,139
	연계금융	153	1,114	66	646	2,730	18,763
	계	1,799	3,181	1,359	5,162	5,082	74,902
송금	자본	1,996	1,986	594	597	453	14,151
	변제	582	1,328	423	303	694	12,778

* 자료 :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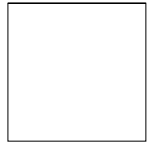
- GDP 대비 외국인투자비율이 59.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GDP 대비 외국인투자비율 현황

(단위 : %)

국가	연도		
	1990	2000	2008
세계 전체 기준	9.1	18.1	24.5
개발도상국 기준	13.8	25.1	24.8
칠레	48.1	60.8	59.6
브라질	8.5	19.0	18.3
중국	5.1	16.2	8.7
한국	2.0	7.1	9.8
인도	0.5	3.7	9.9
인도네시아	6.9	15.2	13.1
말레이시아	23.4	56.2	33.0
멕시코	8.5	16.7	27.1
호주	23.2	28.6	27.4

* 자료 :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UNCTAD



산업별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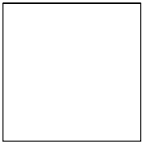
- 1974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업별 외국인 누적투자에 따르면 서비스업과 광업이 전체 5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가스·상수도업 등 사회간접자본 관련 분야에 대한 칠레 정부의 투자유치 등으로 해당 분야 비중이 높음
- 서비스업은 도소매, 은행, 투자, 보험 등의 순서로 외국인 누적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3. 칠레의 외국인 투자 정책¹²⁾

외국인 투자 유지정책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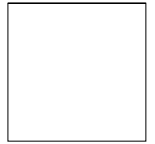
- 외국인투자 개방
- 내외국인 동등 대우
- 원금 및 과실 송금 인정(원금송금은 투자이행 1년 이후 가능)
- 희소광물에 대한 투자 및 외국정부 직접투자 금지
- 정부 간섭 최소화

12) 칠레 무역 및 투자, 칠레 상무관 (2011)



4.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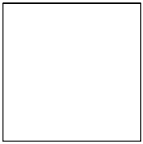
- 외국인투자법(Decree Law 600 또는 DL 600)
 - 피노체트 정권 당시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되었으며, 외국인투자자(개인/법인 무관)가 칠레 정부와의 계약으로 “no tax change” 등 특혜를 보장받는 내용 등을 규정한 법률임
 - DL 600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법인세 납부시 일반세율 납부방식과 최대 20년까지 고정세율로 납부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고정세율을 선택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일반 세율 납부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고정세율로 복귀는 불가능함
 - 칠레 중앙은행은 국가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외환시장 접근을 통제할 수 있으나, DL 600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외환시장 접근이 보장됨
 - DL 600에 의해 투자자가 체결한 계약은 칠레 정부나 기타 법률로써 함부로 수정 또는 제한될 수 없으며, 양자간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가능함
 - DL 600을 통해 투자자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함(최소 투자금액은 500만US\$, 단 기술 도입 등 외국인 투자위원회 승인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투자금액은 250만US\$도 가능)
 - 투자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칠레의 성공적인 외국인투자유치에 큰 영향을 미침(1974년~2002년간 실현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84%가 DL 600을 통하여 유입됨)
 - 최근 칠레 의회는 조세회피 또는 유예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DL 600에 의한 투자유인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음
- 외국인투자 관할기관 : 외국인투자위원회(The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 외국인 투자허가신청 심의, 승인 업무 총괄
 - 투자계약 체결 시 각종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 결정



5. 외국인 투자 절차

-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투자
 - 500만불 이상의 투자
 - 공공부문투자 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
 - 대중매체에 대한 투자
 - 외국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투자
 - 기타 투자의 경우 위원회 사무총장이 심사 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승인

- 절차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
 - 투자 승인 후 즉시 경제부(The Ministry of Economy)와 투자완료기간에 대한 계약 체결
 - 투자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투자규모, 투자자본의 형태 및 각종 인센티브, 규제내용 등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 체결
 - 투자 승인 후 3년 이내(광업의 경우 8~12년)에 자본 반입 의무
 - 5천만US\$ 이상의 투자일 경우 동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단, 광업투자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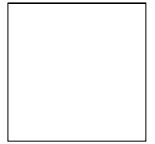
6. 투자우대조치

□ 일반원칙

-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에 한정된 별도의 특혜는 부재
- DL 600 적용기업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조업개시 후 10년간(5천만 US\$ 이상 투자의 경우는 20년간) 고정세율(42% 세율) 적용을 선택 가능 (동 법령 제7조)
- 현재는 일반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일반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 특정업종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 산림개발(법률 제701호)
 - 정부가 산림개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 산림개발을 위한 토지구입시 부동산세 면제
 - 조림 및 관리경비의 75%~90%까지의 보조금 지급
 - 산림개발소득세 50%까지 감면
- 원자재/자본재 수입에 관한 우대조치
 - 자본재 수입관세 납부 유예제도 : 수출품 생산을 위한 기계류 및 수송차량 등 자본재 수입시 7년간 수입관세 납부 유예를 인정하고, 매년 설정되는 목표수출비율(총수출액/총생산액) 달성시 수입관세 면제
 - 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DL 600에 근거하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칠레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류 등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원자재, 중간재 수입관세 환급제도 : 원자재, 중간재를 사용, 제조한 상품을 16개월 이내에 수출하는 경우 동 상품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중간재 수입관세 환급



□ 금융상의 우대조치

-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자는 칠레 생산진흥청(CORFO)로부터 자금지원 (대출) 및 대출보험 수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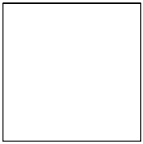
7. 투자 규제 조치

□ 투자규제 업종

- 원유개발 정제 및 판매업 :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영석유공사(ENAP)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투자 가능
- 원자력 관련 광물개발
 - 원자력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
 - 채굴된 자원은 일차적으로 동 위원회에 판매
- 원자력 관련 광물개발
 - 원칙적으로 국적선에 한정
 - 외국인투자기업은 900톤 이상의 화물운송에 참여 가능(단, 운송 가격에 기본수입관세 6%를 추가하고 이 가격이 국내업자 응찰가보다 낮은 경우에 수주 가능)
- 기타 국가안보 관련사업 : 전면 금지
- 신문, 잡지 출판업 : 칠레 국적인에게만 허가
- 방송사업 : 칠레 국적인 또는 법인에게만 허가
- 보험업 : 칠레 국적인에게만 허가

□ 대외송금 제한

- 자본금으로 칠레에 유입되는 외환은 중앙은행이 허가한 은행기구를 통해 현지화로 전환
- 투자원금 회수는 투자이행 1년 이후 가능, 이윤의 송금은 투자이행 즉시 부터 가능



-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증권시장 투자의 경우는 투자 이행 즉시 원금 송금 가능
-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비율 : 100% 외국인 투자 가능
- 현지인 고용의무
 - 종업원 수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5% 이상의 현지인 고용 의무

8. 투자 형태

투자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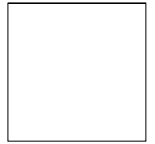
- 칠레에는 크게 개인유한회사, 법인유한회사, 주식회사의 3가지 형태의 회사가 있음
- 주식회사와 (법인)유한회사가 가장 대표적임

개인유한회사 또는 개인회사(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E.I.R.L. (Individual Limited Liability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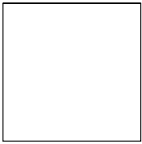
- 2003년 상법에 의해 개인 1명으로도 E.I.R.L를 설립하여 법인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개인유한회사의 상호는 설립자의 이름이나 사업 목적을 나타내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함
- 상호는 “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E.I.R.L)을 포함해야 함

(법인)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유한회사의 출자 자본금에는 제한이 없으며, 최소자본금 규정도 없음
- 출자자(partner)는 자국민, 외국인, 개인, 법인 누구나 가능하나, 최소 2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로 인원 제한이 있음
- 유한회사 설립시에는 최초 자본금의 0.1%를 예치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법인은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야하며, 정관은 관보(*Diario Oficial*, *Official Gazette*)에 게재하여야 함
- 주식회사(*Sociedades anónimas*(*Corporation*))
 - 주식회사 설립시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으나, 설립 후 3년 이내에 신고자본 전액이 납입되어야 함
 - 주식회사는 기업공개(또는 개방형) 주식회사와 비공개(또는 폐쇄형) 주식회사로 나누어짐
 - 기업공개 주식회사는 최소 500명 이상의 주주로 이루어지거나 100명 이상의 주주가 법인자본의 1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함
 - 기업공개 주식회사는 SVS(*Securities and Insurance Superintendency*)의 감시, 감독을 받으며, 비공개 주식회사는 별도의 감시, 감독을 받지 않음
 - 주식회사도 유한회사와 같이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정관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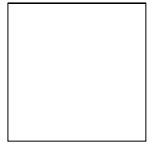


9. 투자 형태별 설립절차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1	설립요건	최소 1명 이상필요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0.1)를 예치하여야 함	
		비공개형의 이사회 임원은 최소 3명이며, 공개형은 최소 5명이 필요		
		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후 3년 내에 자본금 100) 납입	
2	구비서류	본사 법인 등록증		
		본사 법인 정관		
		본사 위임장		
		정관 및 정관 요약본 2부		
		상업등기서 설립 등기 신청서		
		납세자등록번호(RUT) ¹³⁾ 신청서		
		납세자 신분증		
		설립등기 위임장		
		날인된 회계장부, 송장 외 기타 문서		
		법적 대표자 임명에 대한 회의록	주식회사의 경우	
		임대계약서, 소유권 증서 등		
건축 허가증	건물 신축의 경우			
공사 허가증	기존 건물 보수의 경우			

13) RUT는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칠레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RUT)를 발급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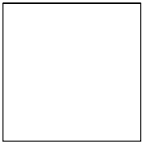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3	설립등기			소재지 관할 상업등기소
4	관보에 게재	정관 요약본	정관 요약본 공증일로부터 60일 이내	
5	납세자등록 번호 발급			소재지 관할 세무서
6	영업허가증 발급			소재지 관할 시청

* 자료 : 산티아고 KBC

□ 지사 설립 절차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1	설립요건	별도의 허가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설립 절차를 진행할 법적 대리인(Representatne Legal) 선임이 필요	법적 대리인은 칠레 내국인 또는 외국인 모두 가능 지사 설립에는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음	
2	구비서류	본사가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서 본사가 현재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증서 본사의 현행 정관 및 내규의 등본 본사가 지사장에게 부여한 본사 대리권	구비서류는 본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 후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야 함	
3	정관작성	지사의 상호 및 목적 칠레 현행 법 및 규칙 준수 지사로의 자금지원 및 방법 대표 지사(La Agencia Principal)의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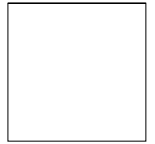
4	상업등기소 등기		공중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재지 관할 상업 등기소
5	관보에 게재	정관 요약본	정관 요약본 공중일로부터 60일 이내	
6	대차대조표 공시	지사의 연간 대차대조표	회계연도 마감 분기 이내에 관보에 게재	

* 자료 : 산티아고 KBC

□ 개인 기업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1	설립요건	설립자가 외국인이고 칠레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칠레 주소지를 보증할 수 있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 (Representatne) 선임		
2	정관작성	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함		
3	상업등기소 등기		공중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재지 관할 상업등기소
4	관보에 게재		공중일로부터 60일 이내	
5	납세자등록 번호 발급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자료 : 산티아고 KBC



IV 한-칠레 FTA 영향 및 진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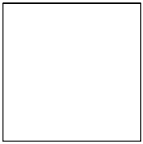
1. 일반 개요

-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발효한 FTA로서 중남미시장개척, 수출입품목 다원화, FTA 협상력 강화, 대내외 국가신뢰도 상승 등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고 있음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칠레 시장 관세 인하 효과로 연평균 33.9%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업체수 증가(43.1% 증가), 수출품목 증가(47.3% 증가) 등으로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 상품의 칠레 시장 내 시장점유율도 증가하여 자동차부품(1위) 및 경유, 철강판(2위)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으며, 칠레 내수 시장 뿐만 아니라 인접 남미 국가 수출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칠레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 및 우수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올해 7월 1일 발효 예정인 한-EU FTA 및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한-미 FTA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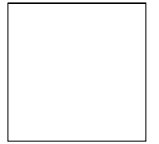
2. 한-칠레 FTA 배경¹⁴⁾

- 중남미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전망되고, 동아시아국가를 대상으로 반덤핑 혐의로 피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중남미 시장 진출 확보를 위해 중남미 국가와의 FTA 필요성 제기됨
- 칠레는 중남미국가 중 안정적인 경제구조 및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며, 개방적인 시장구조를 갖추고 있어 경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임
 - 칠레는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 이전에 미국, EU 등 이미 10개 국가와 FTA를 발효하고 있었으며, 일본, 싱가포르 등 10여개 국가와는 FTA

14)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개방적인 시장구조임
- 칠레는 우리나라가 FTA를 통한 일정 수준의 경제 효과를 얻으면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국가 규모로서 첫 FTA 대상국으로 선정
 - 칠레 총인구 1,505만명(한국의 3분의 1), GDP 규모 665억달러(한국의 5분의 1)(2000년 기준)
 -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주로 칠레에 수출하고, 광물 등 원자재를 칠레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양국의 교역 및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갖추고 있었음
 - 칠레는 일본, 중국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경제규모, 시장 개방성,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먼저 FTA를 발효한 뒤 우리나라와의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중국과의 FTA를 진행한다는 전략으로 칠레 역시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긍정적으로 접근함
 - 2006년 10월 중-칠레 FTA 발효, 2007년 9월 일-칠레 FTA 발효



3. 한-칠레 FTA 의의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FTA를 처음 체결한 상대국이며, 칠레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에는 최초로 FTA를 체결한 상대국임
- 한-칠레 FTA를 통해 중남미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게 됨
- 한-EU FTA, 한-미 FTA 등 중요 무역 협상에 앞서 한-칠레 FTA를 체결함으로써 협상 능력, 노하우 및 관련 자료 축적, FTA 이후 국내·외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살펴볼 수 있었음
-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대외개방 및 내부 개혁 의지를 대내외 과시함으로써 국가대외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함
- 경유,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액이 급증하였으며,
- FTA 발효 이전부터 對칠레 주요 수입 품목이었던 광물 등 산업용 원자재의 수입이 발효 이후에도 증가하였을 뿐, 당초 우려했던 농축산물의 수입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그쳐 양국가간 상호보완적 구조를 갖고 성공한 FTA로 평가받고 있음

한-칠레 FTA 주요 추진 경과

일 자	추진 경과
1999.12.14~17	제1차 협상 개시(산티아고)
2000.2.29~3.3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00.5.16~19	제3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0.12.12~15	제4차 협상 개최(서울)
2002.8.20~23	제5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2.10.18~20	제6차 협상 개최(제네바)
2002.10.25	협상 타결 발표(서울 및 산티아고)
2003.2.15	정식 서명(서울)
2004.4.1	한-칠레 FTA 발효
2004.4.~2011.3.	한-칠레 FTA 이행 점검을 위한 자유무역위원회 7차례 개최

* 자료 : 외교통상부

4.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 교역량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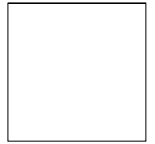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증가율이 28.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동 기간 對중남미 교역증가율은 22.5%, 對세계 교역증가율은 14.5%
- 한-칠레 FTA 발효 이전인 2003년 對칠레 수출액은 517백만US\$, 수입액은 1,057백만US\$ 이었으나, 2010년에 수출액은 2,947백만US\$, 수입액은 4,221백만US\$로 수출액은 5.7배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4배 증가하였음

교역량 현황

(단위:백만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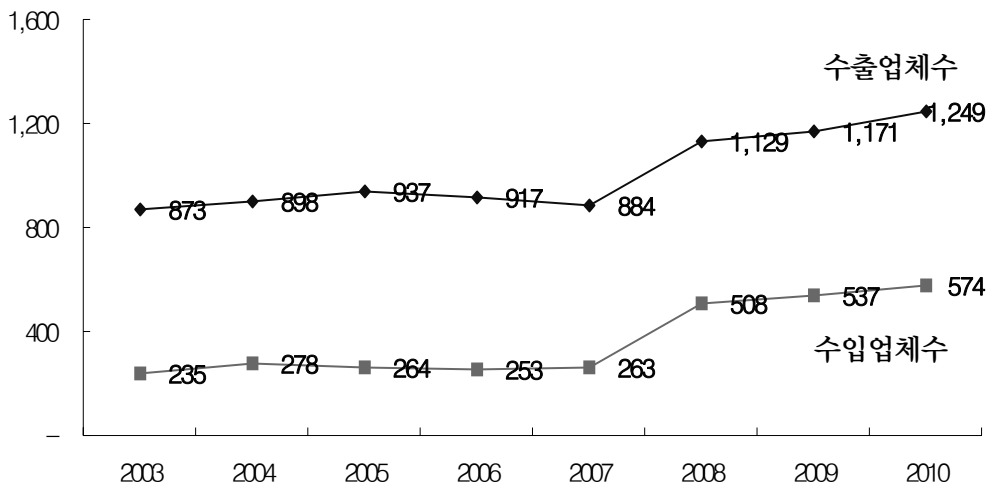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4~'10 증가율
수출 (증가율)		517 (13.9)	708 (36.9)	1,151 (62.5)	1,566 (36.1)	3,115 (98.9)	3,032 (-2.7)	2,229 (-26.5)	2,947 (32.2)	33.9
수입 (증가율)		1,058 (40.3)	1,934 (82.8)	2,279 (17.9)	3,813 (67.3)	4,184 (9.7)	4,127 (-1.3)	3,103 (-24.8)	4,221 (36.0)	26.8
교역 (증가율)		1,575 (30.4)	2,642 (67.7)	3,430 (29.8)	5,379 (56.8)	7,299 (35.7)	7,159 (-1.9)	5,332 (-25.5)	7,168 (34.4)	28.2
수지 (증감액)		-541 (-241)	-1,225 (-684)	-1,128 (97)	-2,247 (-1,119)	-1,069 (1,178)	-1,095 (-27)	-874 (222)	-1,274 (-400)	-
수출 증가율	對세계									14.2
	對중남미									24.0
수입 증가율	對세계									14.8
	對중남미									19.6
교역 증가율	對 界									14.5
	對중남미									22.5

*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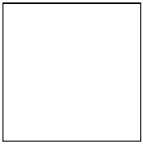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교역업체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수출업체 : 873개(2003년) ⇒ 1,249개(2010년), 43.1% 증가
 - 수입업체 : 235개(2003년) ⇒ 574개(2010년), 144.3% 증가
 - 수입업체 증가는 소규모(1만US\$ 이하) 수입업체임

칠레 교역업체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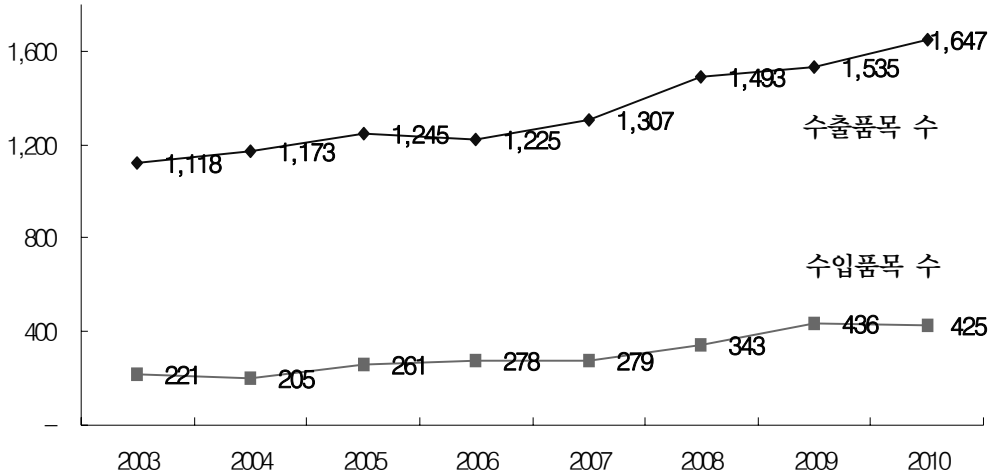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수출, 수입 품목도 증가함
 - 수출품목 : 1,118개(2003년) ⇒ 1,647개(2010년), 47.3% 증가
 - 수입품목 : 221개(2003년) ⇒ 426개(2010년), 92.8% 증가



칠레 교역품목 현황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對칠레 수출입 현황

- 對칠레 수출품목은 경유, 자동차, 철강판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
- FTA 발효 이후 무선전화기, 컴퓨터 수출액이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2010년 칠레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을 위해 철강판, 불도저 등 중장비 수출액도 증가함
- 중-칠레 FTA, 일-칠레 FTA 발효로 일부 가전제품의 경우 수출액이 다소 주춤한 현상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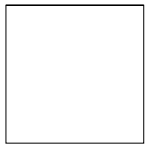


對칠레 주요 수출품목

(단위 : 천US\$, %)

품목	2010년		2003년		7년간 증가율
	순위	수출액	순위	수출액	
경유 등	1	999,377	2	81,713	1,120.6
승용차	2	895,417	1	116,889	666.0
화물자동차	3	129,922	4	30,124	331.3
철강판	4	80,481	14	6,968	1,055.0
에틸렌 중합체	5	53,719	3	34,319	56.5
무선전화기	6	48,814	44	1,148	4,151.5
컴퓨터	7	48,393	25	2,608	1,755.7
자동차부품	8	46,821	6	18,913	147.6
불도저 등 건설중장비	9	42,069	17	4,596	815.4
대형 승합차	10	32,825	8	15,269	115.0
타이어	11	31,984	11	9,264	245.2
합성수지	12	30,173	9	12,517	141.1
컬러 TV	13	21,999	13	7,733	184.5
세탁기	14	19,789	7	15,305	29.3
축전지	15	19,290	16	4,802	301.7
원심분리기	16	16,392	37	1,513	983.2
가열조리기구	17	16,246	49	983	1,553.3
프로필렌	18	15,745	36	1,521	935.4
밸브	19	15,631	22	3,294	374.5
유기화합품	20	13,586	92	301	4,407.4
소계		2,576,672		369,779	
총수출액		2,947,054		517,187	
20개 품목 비중(%)		87.4		71.5	

*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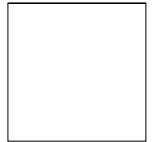
- 對칠레 수입품목은 대부분 광산물이 차지함
- FTA 발효 이후 미정제 동괴, 귀금속 등 발효 이전에 수입하지 않던 물품이 관세인하로 수입되기도 함
- 농산물의 수입증가율은 당초 수입이 급증할거라는 예상과 달리 증가율이 미미하였으며, 포도의 경우 수입산 포도의 상당부분이 칠레산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나타남

對칠레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US\$, %)

품목	2010년		2003년		7년간 증가율
	순위	수입액	순위	수입액	
동괴	1	1,924,058	1	510,516	276.9
동광	2	957,984	2	219,113	337.2
화학목재펠프	3	287,446	4	81,758	251.6
아연광	4	188,728	11	10,534	1,691.5
돼지고기	5	111,477	5	30,147	269.8
몰리브덴광	6	85,285	6	10,307	727.4
미정제 동괴	7	84,989	-	-	-
연광	8	76,570	-	-	-
포도	9	74,654	10	13,656	446.7
귀금속	10	66,588	-	-	-
제재목	11	43,561	13	8,800	395.0
미식용 육류 및 어류	12	39,514	8	14,942	164.4
탄산염	13	38,308	7	1,322	2,797.0
비환식알코올	14	38,125	3	82,877	-54.0
철광	15	31,427	7	15,347	104.8
냉동어류	16	26,742	6	15,872	68.5
포도주	17	24,500	15	2,990	719.4
염화물	18	20,678	27	577	3,480.9
과일주스	19	13,356	45	116	11,394.7
기타과일	20	7,418	18	1,758	321.9
소계		4,141,408		1,020,634	
총수입액		4,221,395		1,057,723	
20개 품목 비중(%)		98.1		96.5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칠레 관세 인하 효과

- 한-칠레 FTA 이후 칠레의 對한국 평균 관세율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2017년에는 사실상 무관세 상태가 예상됨
- FTA 발효 이전인 2003년은 평균 관세율이 6.0%이었으나 현재는 5.46%가 감축하여 0.54%임
- 2017년에는 평균 관세율이 0.07%로 전망되어 사실상 우리나라 제품의 칠레 시장 진출에 있어 관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FTA 발효 이전에는 35개 품목이 무관세이었으나, FTA 발효 이후 3,511개가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며 2011년 현재에는 6,034개가 무관세 품목으로 무관세비율이 75.99%에 달하고 있음

칠레 對한국 무관세 품목수

(단위 : 개, %)

	2003 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②	증가폭 ①-②
무관세 품목수	35	3,546	3,546	3,546	3,547	3,547	6,014	6,014	6,034	5,999
무관세 비율	0.44	44.66	44.66	44.66	44.67	44.67	75.74	75.74	75.99	75.55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증대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 수입시장 진출이 급증하였으며, 칠레 시장내 점유율도 동반 상승함
- 2010년 기준 칠레 시장점유율은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이어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FTA 발효이전 점유율 2.98%(7위) ⇒ 2010년 점유율 6.41%(5위)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백만U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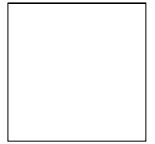
순위	2003년			2004년			2010년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아르헨티나	3,766	21.7	아르헨티나	4,146	18.5	미국	9,372	17.6
2	미국	2,507	14.4	미국	3,376	15.1	중국	8,319	15.7
3	브라질	2,021	11.6	브라질	2,779	12.4	아르헨티나	4,653	8.9
4	중국	1,366	7.9	중국	1,918	8.6	브라질	4,631	8.8
5	독일	698	4.0	독일	827	3.7	한국	3,373	6.4
6	일본	634	3.7	일본	799	3.6	일본	2,929	5.5
7	한국	540	3.0	한국	696	3.1	멕시코	2,037	3.9

* 자료 : 칠레관세청

- FTA 발효 이전 칠레 자동차 시장은 일본이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넓혀감으로써 2007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칠레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중남미 시장 개척

- 한-칠레 FTA 이후 칠레 인접 국가인 페루, 콜롬비아 등에 대한 수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중남미 시장 개척에 중추적 역할을 함
- 한-칠레 FTA가 칠레 시장 확대 뿐만 아니라,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5. 칠레 투자 성공 사례 - 이견산업(주)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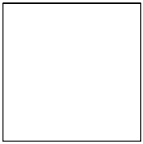
- 이견산업(주)는 국내 목재 합판 전문 기업체로서 1993년 칠레에 진출한 후 칠레가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및 매출 증가를 이룬 성공 기업임

□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 이견 라우타로의 설립 초기에는 본사에 원자재 공급 목적으로 한국으로의 수출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건설경기 침체로 한국으로의 매출이 급감하게 됨 ⇒ 한국 본사는 칠레 법인 폐쇄 여부 검토
- 1998년 멕시코-칠레 FTA 체결되어 이견 라우타로는 기존의 한국 본사로의 물량 공급 기지에서 멕시코 시장 진출을 위한 독자적 수출 기지로 경영 전략 수정함
- 이후 EU-칠레 FTA, 미-칠레 FTA, 한-칠레 FTA 등이 체결됨에 따라 칠레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칠레 FTA 체결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 유럽 및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게 됨

□ FTA 활용 효과

- 대외 경쟁력 확보
 - 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 : 일반관세, Quota에 따른 특별관세에 대해 무관세 혜택
 - 수출 절차 간소화 : 세관 심사과정 중 서류심사 및 수시 검사 제외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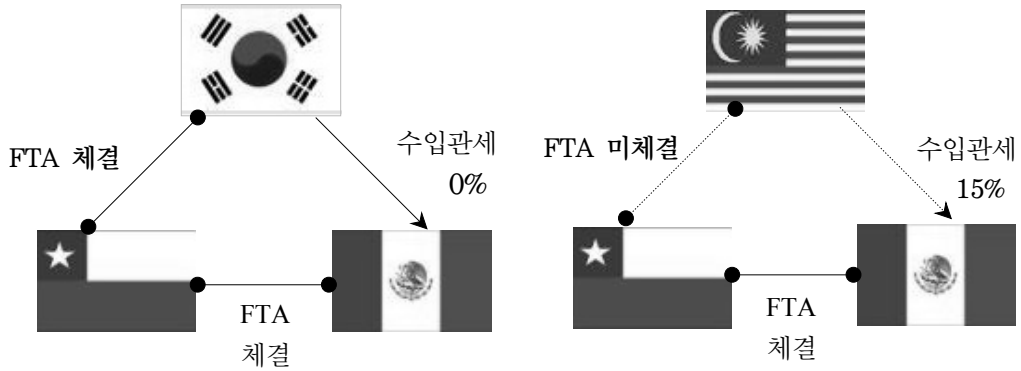


지역별 수출 관세

지 역	기준 관세율(%)	FTA 양허 관세율(%)
유럽	7	0
미국	8	0
멕시코	15	0
NZ	7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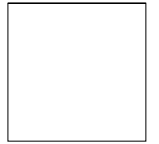
* 자료 : 이진산업(주)

- 경쟁국인 말레이시아 합판의 경우 멕시코 수출시 : 15%이상 관세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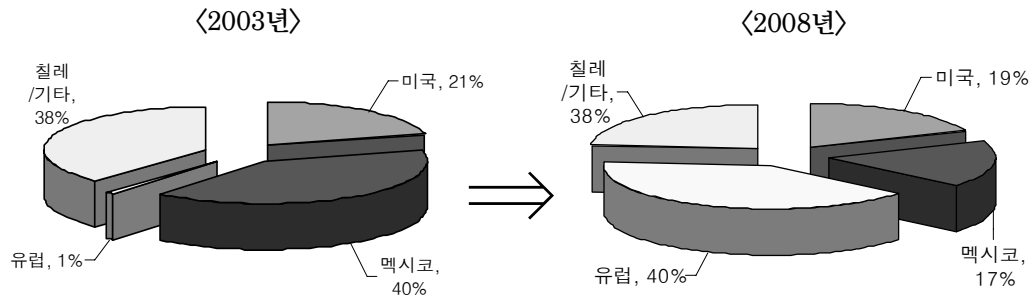


○ 시장 다변화

- 칠레 FTA 체결국들에 대한 시장 진입이 용이하여 시장 다변화 전략이 가능함
- EU-칠레 FTA 체결 이후 이진 라우타로의 유럽시장 비중이 1% ⇒ 40%로 급증함



이건 라우타로 시장 변화 현황



* 자료 : 이견산업(주)

○ 매출 증대

- 가격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시장 다변화로 매출액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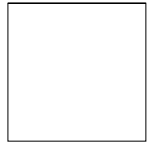
○ 고용 증대

- 이견 라우타로 고용 증대 : 108명 (1993년) ⇒ 410명 (2010년)
-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 이견산업(주) Bernardo O'Higgins 훈장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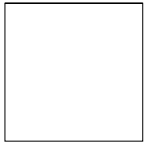
별지 1

칠레 세무서 현황

구분	도 시	주 소	전 화	민원업무시간
1	ARICA	BAQUEDANO N°731, OFICINA 412	(58) 255134	08:45 ~ 13:45
2	IQUIQUE	SAN MARTÍN N°460	(57) 514689	09:00 ~ 13:00
3	ANTOFAGASTA	SAN MARTÍN N°2634, OFICINA 42, PISO 4	(55) 531968 - 531970	08:00 ~ 13:00
4	CALAMA	V.MACKENNA 2002 (MUNICIPALIDAD DE CALAMA)	(55) 318575 (55) 316225	08:00 ~ 13:00
5	COPIAPÓ	YERBAS BUENAS N°263	(52) 210592	08:30 ~ 13:45
6	VALLENAR	PLAZA N°02, DEPTO.11	(51) 611320 ANEXO 329	08:45 ~ 13:45
7	COQUIMBO	ALDUNATE N°875	(51) 317328	09:00 ~ 13:00
8	LA SERENA	CARRERA N° 301	(51) 206782	08:30 ~ 14:00
9	ZAPALLAR	GERMÁN RIESCO N°399, PISO 2	(33) 742255	09:00 ~ 14:00
10	VALPARAÍSO	AVDA. ARGENTINA N°862	(32) 939561	09:00 ~ 13:45
11	VIÑA DEL MAR	ARLEGUI N°777	(32) 2996584 - 2996586	09:00 ~ 14:00
12	QUILPUÉ	CAMILO HENRÍQUEZ N°394	(32) 2913636	08:45 ~ 13:45
13	CON-CON	SAN AGUSTÍN N°690, OFICINA 1, PISO 2	(32) 813745	09:00 ~ 14:00
14	OLMUÉ	PRAT N°12	(33) 443135	09:00 ~ 14:00
15	MACHALÍ	PLAZA DE ARMAS N°11, PISO 1, MUNICIPALIDAD DE MACHALÍ	(72) 330349	08:00 ~ 13:00
16	SAN VICENTE DE TAGUA	TAGUA TAGUA N°222	(72) 574343 - 326827	08:00 ~ 14:00
17	RENGO	URRIOLA N° 26, PISO 2, DIRECCIÓN DE OBRAS	(72) 515773	08:30 ~ 14:00
18	REQUINOA	COMERCIO N°121	(72) 952668	08:30 ~ 13:00
19	S A N FERNANDO	CARAMPANGUE N° 865	(72) 585146 - 585145	08:30 ~ 14:00
20	SANTA CRUZ	NICOLAS PALACIOS 274	(72) 823983	08:30 ~ 14:00
21	MOLINA	YERBAS BUENAS 1389	(75) 543308 - 543309	08:20 ~ 14:00
22	TALCA	1 ORIENTE N°1059, PISO 2	(71) 203890	08:30 ~ 13:30



구분	도 시	주 소	전 화	민원업무시간
23	CONSTITUCIÓN	FREIRE N°477 PISO 2	(71) 671145, ANEXO 55	08:30 ~ 13:30
24	LINARES	EDIFICIO BERNARDO O'HIGGINS LOCAL N°7B	(73) 560219	08:30 ~ 13:30
25	CHILLÁN	EDIFICIOS PUBLICOS, AVDA. LIBERTAD S/N	(42) 433378	08:30 ~ 13:30
26	CONCEPCIÓN	CAUPOLICÓN N°518, OFICINA 303 PISO 3	(41) 2266726 - 2266535	08:45 ~ 13:45
27	TALCAHUANO	SAN MARTIN 250 (CASILLA 87 TALCAHUANO)	(41) 2504240 - 2504241	09:00 ~ 14:00
28	SAN PEDRO DE LA PAZ	LOS ACACIOS N°43 SAN PEDRO DE LA PAZ	(41) 2501904	08:00 ~ 14:00
29	LOS ANGELES	AV. ALEMANIA N° 170	(43) 317344 - 408685	08:30 ~ 13:30
30	TEMUCO	PRAT N° 872	(45) 973312 - 973316	08:30 ~ 13:30
31	PUCÓN	FRESIA N° 452	(45) 443151	08:40 ~ 13:40
32	PADRE LAS CASAS	MAQUEHUE N° 1441	(45) 208003	08:30 ~ 13:00
33	ANGOL	LAUTARO N° 226 EDIF. GOBERNACIÓN ANGOL	(45) 712062	08:40 ~ 13:40
34	VILLARRICA	CAMILO HENRIQUEZ N° 590 OF. 3	(45) 416305	08:40 ~ 13:40
35	VALDIVIA	INDEPENDENCIA N°455, PISO 4	(63) 220400	08:30 ~ 14:00
36	PUERTO MONTT	O HIGGINS 236 2° PISO- EX EDIFICIO ESCUELA DE LA CULTURA	(65) 482685 - 484589	08:30 ~ 13:30
37	PUNTA ARENAS	JULIO ROCA 940? 2° PISO	(61) 200304 - 200506	08:00 ~ 13:00
38	SANTIAGO	BALMACEDA 1114 2DO PISO	6727265	09:00 ~ 14:00
39	RECOLETA	SANTOS DUMONT N°453	7770840	09:00 ~ 14:00
40	INDEPENDENCIA	AV. INDEPENDENCIA 753	9232494	09:00 ~ 14:00
41	QUINTA NORMAL	AV. CARRASCAL 4447	8928611	08:30 ~ 14:00
42	MAIPÚ	CARMEN LUISA CORREA N°76 B	9429163 - 9429216	09:00 ~ 14:00
43	PUDAHUEL	AV. SAN PABLO N°8844	4455981	09:00 ~ 14:00



구분	도 시	주 소	전 화	민원업무시간
44	QUILICURA	AV. JOSÉ FCO. VERGARA N°285, OF. 12	6271798	08:30 ~ 14:00
45	ESTACIÓN CENTRAL	AV. LIBERTADOR BDO. O'HIGGINS N°4202	7645261	09:00 ~ 14:00
46	HUECHURABA	AV. RECOLETA N° 5315	7511323 - 324	08:30 ~ 14:00
47	CERRILLOS	LAS HORTENSÍAS N° 400	5574496 5574461	08:30 ~ 14:00
48	COLINA	AV. CONCEPCIÓN N° 700	7073329 - 7073330	08:30 ~ 14:00
49	LAMPA	BAQUEDANO N° 876	2586103 - 2586144	09:00 ~ 14:00
50	ÑUÑO A	AV. IRARRÁZ AVAL 3550	2533705	08:30 ~ 14:00
51	LA FLORIDA	AV. VICUÑA MACKENNA N°7770, (Piso 1 atención de público)	6365638 - 6365658	08:45 ~ 14:00
52	LA REINA	AV. LARRA?N N°8580, OFICINA N° 7, PISO 2	5927329	09:00 ~ 14:00
53	MACUL	LOS PLÁTANOS 3130	8739032 - 8739033	09:00 ~ 14:00
54	PEÑALOLÉN	AV. GRECIA N° 8335	2799036 - 2799040	08:30 ~ 14:00
55	VITACURA	AV BICENTENARIO N° 3800 1° PISO	2402299 - 2402282	09:00 ~ 14:00
56	LO BARNECHEA	CALLE LA NIEBLA N° 39, LOCAL 16	2435033 - 2175822	09:00 ~ 14:00
57	PIRQUE	AV, CONCHA Y TORO N° 02548	3858563	09:00 ~ 14:00
58	SAN JOSÉ DE MAIPO	UNO SUR N° 50	26784976	09:00 ~ 14:00 15:00 ~ 17:30
59	PROVIDENCIA	AV. PEDRO DE VALDIVIA N°963 DEPTO. CATASTRO	6543533	08:30 ~ 14:00 15:00 ~ 17:30
60	LA CISTERNA	EDIFICIO CONSISTORIAL 3° PISO - OFICINA 23	5407668 - 5583491	09:00 ~ 14:00
61	EL BOSQUE	ALEJANDRO GUZMAN N° 23 - PASILLO 7	5401780	09:00 ~ 14:00
62	SAN BERNARDO	ARTURO PRAT N° 288 LOCAL 10 Y 11	8582771, 9270931	09:00 ~ 14:00
63	BUIN	CARLOS CONDELL N° 421	8218510	08:30 ~ 14:00
64	PAINE	MAIPO N° 520 (CENTRO CIVICO DE PAINE)	8218686	09:00 ~ 14:00

* 자료 : 칠레국세청

칠레 소득 신고서 양식

REPUBLICA DE CHILE
SERVICIO DE IMPUESTOS INTERNOS

AÑO TRIBUTARIO 2011
IMPUESTOS ANUALES A LA RENTA

FORM. 22

TIPOS DE RENTAS Y REBAJAS		CREDITO POR IMP. 1ª CATEG. EMPRESARIO INDIVIDUAL	CREDITO POR IMPUESTO 1ª CATEGORIA	RENTAS Y REBAJAS	
1	Retiros (Arts. 14, 14 bis y 14 quáter).	847	600	104	+
2	Dividendos distribuidos por S.A., C.P.A. y S.p.A. (Arts. 14, 14 bis y 14 quáter).		601	105	+
3	Gastos rechazados, Art. 33º Nº 1, pagados en el ejercicio (Art. 21).		602	106	+
4	Rentas presuntas de Bienes Raíces, Minería, Explotación de Vehículos y otras (Arts. 20 Nº1, 34 Nº1 y 34 bis Nºs 2 y 3).		603	108	+
5	Rentas determinadas según contabilidad simplificada (Art. 14 ter), planillas, contratos y otras rentas.		604	109	+
6	Rentas percibidas de Arts. 42 Nº2 (Honorarios) y 48 (Rem. Directores S.A.), Según Recaudro Nº1.		777	110	+
7	Rentas de capitales mobiliarios (Art. 20 Nº 2), Retiros de ELDI (Art. 42 ter) y Ganancias de Capital (Art. 17 Nº 8), etc.		605	155	+
8	Rentas exentas del Impuesto Global Complementario (Art. 54 Nº3).		806	152	+
9	Rentas del Art. 42 Nº 1 (sueldos, pensiones, etc.).		777	161	+
10	Incremento por Impuesto de Primera Categoría.	159	748	749	+
11	Impuesto de Primera Categoría pagado en el año 2010.	165	166	764	-
12	Pérdida en operaciones de capitales mobiliarios y ganancias de capital según líneas 2, 7 y 8 (Ver instrucciones).			169	-
13	SUB TOTAL (Si declara Impuesto Adicional trasladar a línea 43 ó 44).			158	=
14	Cotizaciones previsionales correspondientes al empresario o socio (Art. 55 letra b).			111	-
15	Ingresos pagados por otros con garantía hipotecaria según su tipo.	750	740	751	-
16	30% Cuenta Fidei, Inversión Administrada según Art. 55.	822	765	766	-
BASE IMPONIBLE DE GLOBAL COMPLEMENTARIO (Registre sólo si diferencia es positiva)					
18	Impuesto Global Complementario según tabla (Art. 52).		157	170	+
19	Débito Fiscal por Ahorro Neto Negativo (Nº 5 letra A y ex letra B Art. 57 bis).		201	202	+
20	Crédito Fomento Forestal según D.L. Nº701/74.		135	136	-
21	Crédito proporcional por rentas exentas declaradas en línea 8 (Art. 56 Nº2).		136	137	-
22	Crédito por rentas de Fondos Mutuos sin derecho a devolución.		171	172	-
23	Crédito por Impuesto Tasa Adicional según ex Art. 21.		176	177	-
24	Crédito por donaciones para fines culturales (Art. 8 Ley Nº 18.985/90).		607	608	-
25	Crédito por donaciones para fines deportivos (Art. 62 y sgtes. Ley Nº 19.712/2001).		752	753	-
26	Crédito por donaciones para fines sociales (Art. 1º bis Ley Nº 19.885/2003).		867	868	-
27	Crédito por Impuesto de Primera Categoría sin derecho a devolución (Art. 56 Nº3).		608	609	-
28	Crédito por donaciones a Universidades e Institutos Profesionales (Art.69 Ley Nº18.681/87).		609	610	-
29	Crédito por Impuesto Único de Segunda Categoría (Art. 56 Nº 2).		165	166	-
30	Crédito por Ahorro Neto Positivo (Nº4 letra A y ex letra B Art. 57 bis).		174	175	-
31	Crédito por Impuesto de Primera Categoría con derecho a devolución (Art. 56 Nº 3).		610	611	-
32	Crédito por impuestos pagados o retenidos en el exterior (Arts. 41 A letra A y 41 C).		348	349	-
33	Crédito por donaciones al Fondo Nacional de Reconstrucción (Art. 5 y 9 Ley Nº 20.444/2009).		346	347	-
34	IMPUESTO GLOBAL COMPLEMENTARIO Y/O DEBITO FISCAL DETERMINADO		364	365	=
IMPUESTOS ANUALES A LA RENTA		BASE IMPONIBLE		REBAJAS AL IMPUESTO	
35	IMPUESTOS			31	+
36	Impuesto Primera Categoría sobre rentas efectivas.	18	19	20	+
37	Impuesto Especifico a la Actividad Minera (Art. 64 bis)	824		825	+
38	Impuesto Primera Categoría sobre rentas presuntas.	167	168	169	+
39	Impuesto Único Primera Categoría.	105		106	+
40	Impuesto Art. 2º D.L. 2398/78.	77	78	79	+
41	Impuesto Único Inc. 3º Art. 21 Ley de la Renta.	113		114	+
42	Impuesto Adicional por Exceso de Endeudamiento.	766		767	+
43	Impuesto Adicional D.L. 600/74.	138		139	+
44	Impuesto Adicional Ley de la Renta.	37		38	+
45	Resiquidación Impuesto Único Form. 2514 (Art. 47).	163		164	+
46	Impuesto Único Talleres Artesanales.	21		22	+
47	Impuesto Único por Retiro de Ahorro Previsional Voluntario según Nº 3 inciso IV Art. 21 (81).	107		108	+
48	Resiquidación Glób. Compa. por Terceros (Arts. 1º y 2º bis).	51		52	-
49	Pagos Provisionales (Art. 84)	86		87	-
50	Cédulo por Gastos de Capacitación	60		61	-
51	Cédulo Empresas Constructoras	83		84	-
52	Retenciones por intereses de línea de endeudamiento	138		139	-
53	Retenciones por intereses de línea 7 y/o 7 bis	432		433	-
54	Pago Provisional por Utilidades Abstradas Ley Nº 18.786/2001	181		182	-
55	Retenciones sobre intereses de línea 55 y/o 55 bis	119		120	-
56	Cédulo para el cálculo de intereses de línea 56	58		59	-
57	Cédulo por devengar los intereses de línea 57	480		481	-
58	RESULTADO LIQUIDACIÓN ANUAL IMPUESTO RENTA (Si el resultado es negativo o cero, deberá declarar por Internet).			305	=

Si el resultado es negativo, anulelo en el código 304 en el cuadro 58 y vea instrucciones para la línea 34.

Si el resultado es positivo, anulelo en el código 304 sin anularlo y luego trasládalo al código 31 de la línea 35.

ROL ÚNICO TRIBUTARIO	01 Primer Apellido o Razón Social	02 Segundo Apellido	05 Nombres
03			

DEVOLUCIÓN SOLICITADA

50 SALICIO A FAVOR 85

51 INTERÉS FIANDO CUENTA A DISPOSICIÓN 86

52 MONTO 87

53 MONTO DEPOSITAR REMANENTE EN CUENTA CORRIENTE O DE AHORRO BANCARIA 88

54 Nombre Institución Bancaria 89

55 Tipo de Cuenta 90

56 Cuenta Corriente 91

57 Cuenta Vívida 92

58 Cuenta de Ahorro 93

IMPUESTO A PAGAR

62 Impuesto Adeudado 90

63 Reajuste Art. 72 línea 62: % 91

64 TOTAL A PAGAR (LINEAS 62 + 63) 92

RECARGOS POR DECLARACION FUERA DE PLAZO

65 MAS: Reajustes declaración fuera de plazo 93

66 MAS: Intereses y Multas declaración fuera de plazo 94

67 TOTAL A PAGAR (LINEAS 64+65+66) 95

NOTA: El Rol Único Tributario, Nombre o Razón Social, Resultado Liquidación Anual Impuesto Renta, Domicilio, Comuna, Región y el resto de los datos de identificación son obligatorios.

EVITESE PROBLEMAS, DECLARE POR INTERNET www.sii.cl

EJEMPLAR GRATUITO

TODOS LOS CONTRIBUYENTES DEBEN COMPLETAR LOS SIGUIENTES DATOS:

06	Calle		N°		Of. Depto.		Ciudad		
08	Comuna		53	Región	13	Actividad, Profesión o Giro del Negocio		14	Cod. Actividad/Economía
Domicilio Postal		44	Comuna Postal		726				
Teléfono		9	Fax		48		Correo Electrónico		55
Ley N° 18.200/19/18		95	S.I.P.L. Ley N° 19.877/18		787		S.I. Ley N° 20.427/18		73
Ley N° 18.709 (Revalor)		786	D.L. N° 400 (L. 1.3.)		68		Ley N° 40 N° 2 y 4 LUR		69
Decreto Ley Fomento Construcción		805	ORDEN		813		Artículo 87 Ley LUR		46
Ley N° 18.200/19/18		95	S.I.P.L. Ley N° 19.877/18		787		S.I. Ley N° 20.427/18		73
Ley N° 18.709 (Revalor)		786	D.L. N° 400 (L. 1.3.)		68		Ley N° 40 N° 2 y 4 LUR		69
Decreto Ley Fomento Construcción		805	ORDEN		813		Artículo 87 Ley LUR		46
Ley N° 18.200/19/18		95	S.I.P.L. Ley N° 19.877/18		787		S.I. Ley N° 20.427/18		73
Ley N° 18.709 (Revalor)		786	D.L. N° 400 (L. 1.3.)		68		Ley N° 40 N° 2 y 4 LUR		69
Decreto Ley Fomento Construcción		805	ORDEN		813		Artículo 87 Ley LUR		46
Ley N° 18.200/19/18		95	S.I.P.L. Ley N° 19.877/18		787		S.I. Ley N° 20.427/18		73
Ley N° 18.709 (Revalor)		786	D.L. N° 400 (L. 1.3.)		68		Ley N° 40 N° 2 y 4 LUR		69
Decreto Ley Fomento Construcción		805	ORDEN		813		Artículo 87 Ley LUR		46
Ley N° 18.200/19/18		95	S.I.P.L. Ley N° 19.877/18		787		S.I. Ley N° 20.427/18		73
Ley N° 18.709 (Revalor)		786	D.L. N° 400 (L. 1.3.)		68		Ley N° 40 N° 2 y 4 LUR		69
Decreto Ley Fomento Construcción		805	ORDEN		813		Artículo 87 Ley LUR		46

RENTAS DE 2ª CATEGORÍA				Renta Actualizada		Rendimiento Actualizado	
honorarios Anuales Con Retención	461				492		
honorarios Anuales Sin Retención	545						
incrementos por impuestos pagados a retención en el ejercicio	856						
Total Ingresos Brutos	547						
Participación en Soc. de Prof. de 2º Cat. g.	617						
Bienes Anua Preconal Voluntaria según Ley N° 18.200/19/18	770						
Gastos por donaciones al FNR (Art. 5 Ley N° 20.444/2010)	865						
Gastos por donaciones para fines sociales (Art. 11 Ley N° 18.200/19/18)	872						
Gastos Excepc. (de los del Total Ingresos Brutos)	465						
Gastos Preconal 20% sobre el adq. 2017, 2018, 2019 y 2020	494						
Otros gastos por retención de retención de zona de riesgo	850						
Total Honorarios	467						
Total Remuneraciones Directores S.A.	479				491		
Total Rentas y Retenciones	618				619		

RENTAS DE 1ª CATEGORÍA				Renta Actualizada		Rendimiento Actualizado	
Ingresos de Giro Percibidos o Devengados	628						
Rentas de Fuente Extranjera	851						
Intereses Percibidos o Devengados	629						
Otros Ingresos Percibidos o Devengados	651						
Costo Directo de los Bienes y Servicios	630						
Remuneraciones	631						
Depreciación sobre bienes de propiedad del contribuyente	632						
Intereses Pagados o Acreditados	633						
Gastos por Donaciones para fines Sociales	792						
Gastos por Donaciones para fines Patrimoniales	793						
Gastos por otras Donaciones según Art. N° 10, Ley N° 18.200/19/18	772						
Gastos por donaciones según Art. 7 Ley N° 18.200/19/18	873						
Gastos por inversión en Investigación y Desarrollo	852						
Costos y Gastos necesarios para producir las Rentas de Fuente Extranjera	853						
Pérdidas de Ejercicios Anteriores e Ingresos como consecuencia de abandono o mantenimiento	869						
Otros Gastos Deducibles de los Ingresos Brutos	635						
Renta Líquida (o Pérdida)	636						
Corrección Monetaria Débito Deudor (Art. 32)	637						
Corrección Monetaria Débito Acreedor (Art. 32)	638						
Gastos Rechazados (Art. 23 NF 1)	639						
Gastos Rechazados por Donaciones para fines Sociales	794						
Gastos Rechazados por Donaciones para fines Patrimoniales	812						
Gastos Rechazados por otros Deudores según Art. N° 10, Ley N° 18.200/19/18	811						
Gastos rechazados por donaciones al FNR (Art. 4° y 8° Ley N° 20.444/2010)	876						
Impuesto Específico a la Actividad Minera	827						
Pérdidas de Ejercicios Anteriores (Art. 31 NF 2)	634						
Ingresos No Renta (Art. 17)	640						
Otras Pérdidas	807						
Rentas Eventos Impo. 1ª Categoría (Art. 23 NF 2)	641						
Dividendos y/o Utilidades Sociales (Art. 23 NF 2)	642						
Renta Líquida (o Pérdida) antes de rebajar como gasto las donaciones al FNR	874						
Gastos deducibles por donaciones al FNR (Art. 4° y 8° Ley N° 20.444/2010)	875						
Rentas Eventos de Impuesto de Primera Categoría (Art. 14 Quiltes y Art. 40 N° 7)	808						
Renta Líquida Imponible (o Pérdida Tributaria)	843						
Base imponible Renta Presunta	809						
Rentas afectas al Impuesto Único de Primera Categoría	809						
Rentas por arrendos de Bienes Raíces no agrícolas	789						
Rentas por arrendos de Bienes Raíces agrícolas	789						
Otras rentas afectas al Impuesto de Primera Categoría	760						
Gasto de Caja (solo dinero en efectivo) durante el ejercicio	101						
Gasto cuenta corriente durante el ejercicio	784						
Total préstamos efectuados durante el ejercicio	799						
Existencia Final	729						
Activo Inmovilizado	847						
Depreciación tributaria de ejercicio	763						
Bienes Adquiridos Contrato Leasing	648						
Monto Inversión Ley Acrea	815						
Monto Inversión Ley Austral	741						
Total del Activo	122						
Total del Pasivo	123						
Capital Excepc.	102						
Capital Propio Tributario Positivo	645						
Capital Propio Tributario Negativo	646						
Patrimonio Financiero	843						
Total Capital Entero	844						
Total A.N.P. de Ejercicio	701						
A.N.P. utilizado en el Ejercicio	702						
Remanente A.N.P. Ejercicio Siguiente	703						
Total A.N.P. de Ejercicio	704						
Base Débito Fiscal del Ejercicio	705						

RENTAS DE 3ª CATEGORÍA				Renta Actualizada		Rendimiento Actualizado	
Gasto crédito contribuyentes Art. 14 bis	236						
Gasto crédito impuesto tasa adicional ex-Art. 21	238						
Gasto por donación al FNR según Ley N° 20.444/2010 de ejercicio	877						
Gasto por donación al FNR según Ley N° 20.444/2010 impuesto en el ejercicio	878						
Remanente gasto por donación al FNR según Ley N° 20.444/2010 ejercicio siguiente	879						
Crédito por gastos de Depreciación Mensual con derecho a devolución (Art. 6, Ley N° 20.526/2006)	859						
Crédito por Gastos de Capitalización según Plan Control con derecho a devolución (Art. 14, Ley N° 20.351/2006 y Art. 14 Ley N° 20.454/2010)	860						
Pagos Provisionales pagados con crédito por gastos capitalización (Art. 11, Ley N° 20.444/2010)	864						
Agregado a la RL (o Pérdida Tributaria) de Primera Categoría según Art. 84 ter	884						
Deduciones a la RL (o Pérdida Tributaria) de Primera Categoría según Art. 84 ter	885						
Ventas expresadas en toneladas métricas de cobre fino según Art. 84 bis	886						
Margen Operacional Minero según Art. 84 bis	887						

RENTAS DE 4ª CATEGORÍA				Renta Actualizada		Rendimiento Actualizado	
Saldo rentas e ingresos al 31-12-20	224						
Remanente FUT ejercicio anterior con crédito	774						
Remanente FUT ejercicio anterior sin crédito	775						
Saldo negativo ejercicio anterior	284						
R.L.I. 1ª Categoría de ejercicio	225						
Rentas Externas de Impuesto de Primera Categoría (Art. 14 Quiltes y Art. 40 N° 7)	883						
Pérdida Tributaria 1ª Categoría de ejercicio	229						
Gastos Rechazados afectos al Art. 21	623						
Gastos Rechazados no gravados con el Art. 21	624						
Inversiones recibidas en el ejercicio (Art. 14)	227						
Diferencia entre depreciación acelerada y normal	776						
Dividendos y otros recibidos, participaciones en entidades simplificadas y otras poseídas de otras empresas	777						
FUT devengado recibidos de sociedades de personas	781						
FUT devengado traspasado a empresas o sociedades de personas	782						
Reposición Pérdida Tributaria	783						
Rentas presuntas o participación en rentas presuntas	785						
Otras Pérdidas que se agregan	791						
Pérdidas que se deducen (Reservas presuntas, etc.)	875						
Revisión o Doble Impuesto al FUT en el ejercicio	876						
Remanente FUT para el Ejerc. Sig. con crédito	231						
Remanente FUT para el Ejerc. Sig. sin crédito	318						
Saldo negativo para el ejercicio siguiente	232						
Remanente Crédito Impo. 1ª Categoría ejercicio anterior	625						
Crédito Impo. 1ª Categoría ejercicio anterior	626						
Crédito Impo. 1ª Categoría ejercicio anterior de sociedades de personas	874						
Crédito Impo. 1ª Categoría ejercicio anterior	877						
Remanente Crédito Impo. 1ª Categoría ejercicio anterior	878						
Saldo negativo para el ejercicio siguiente	879						
Remanente Crédito Impo. 1ª Categoría ejercicio anterior	880						
Saldo negativo para el ejercicio siguiente	881						
Crédito Impo. 1ª Categoría ejercicio anterior	882						
Crédito Impo. 1ª Categoría ejercicio anterior	883						
Crédito Impo. 1ª Categoría ejercicio anterior	884						
Saldo negativo para el ejercicio siguiente	885						
Saldo negativo para el ejercicio siguiente	886						
Saldo negativo para el ejercicio siguiente	887						

RENTAS DE 5ª CATEGORÍA				Renta Actualizada		Rendimiento Actualizado	
Régimen Ganerario	796				799		802
Régimen Impo. Único 1ª Cat. g.	797				800		803
Régimen Art. 18 ter y Art. 107	798				801		804

RENTAS DE 6ª CATEGORÍA				Renta Actualizada		Rendimiento Actualizado	
Saldo crédito contribuyentes Art. 14 bis	236						
Saldo crédito impuesto tasa adicional ex-Art. 21	238						
Gasto por donación al FNR según Ley N° 20.444/2010 de ejercicio	877						
Gasto por donación al FNR según Ley N° 20.444/2010 impuesto en el ejercicio	878						
Remanente gasto por donación al FNR según Ley N° 20.444/2010 ejercicio siguiente	879						
Crédito por gastos de Depreciación Mensual con derecho a devolución (Art. 6, Ley N° 20.526/2006)	859						
Crédito por Gastos de Capitalización según Plan Control con derecho a devolución (Art. 14, Ley N° 20.351/2006 y Art. 14 Ley N° 20.454/2010)	860						
Pagos Provisionales pagados con crédito por gastos capitalización (Art. 11, Ley N° 20.444/2010)	864						
Agregado a la RL (o Pérdida Tributaria) de Primera Categoría según Art. 84 ter	884						
Deduciones a la RL (o Pérdida Tributaria) de Primera Categoría según Art. 84 ter	885						
Ventas expresadas en toneladas métricas de cobre fino según Art. 84 bis	886						
Margen Operacional Minero según Art. 84 bis	887						

RENTAS DE 7ª CATEGORÍA				Renta Actualizada		Rendimiento Actualizado	
Saldo crédito contribuyentes Art. 14 bis	236						
Saldo crédito impuesto tasa adicional ex-Art. 21	238						
Gasto por donación al FNR según Ley N° 20.444/2010 de ejercicio	877						
Gasto por donación al FNR según Ley N° 20.444/2010 impuesto en el ejercicio	878						
Remanente gasto por donación al FNR según Ley N° 20.444/2010 ejercicio siguiente	879						
Crédito por gastos de Depreciación Mensual con derecho a devolución (Art. 6, Ley N° 20.526/2006)	859						
Crédito por Gastos de Capitalización según Plan Control con derecho a devolución (Art. 14, Ley N° 20.351/2006 y Art. 14 Ley N° 20.454/2010)	860						
Pagos Provisionales pagados con crédito por gastos capitalización (Art. 11, Ley N° 20.444/2010)	864						
Agregado a la RL (o Pérdida Tributaria) de Primera Categoría según Art. 84 ter	884						
Deduciones a la RL (o Pérdida Tributaria) de Primera Categoría según Art. 84 ter	885						
Ventas expresadas en toneladas métricas de cobre fino según Art. 84 bis	886						
Margen Operacional Minero según Art. 84 bis	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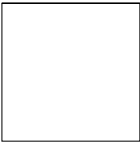
RENTAS DE 8ª CATEGORÍA				Renta Actualizada		Rendimiento Actualizado	
Régimen Ganerario	796				799		802
Régimen Impo. Único 1ª Cat. g.	797				800		803
Régimen Art. 18 ter y Art. 107	798				801		804

RENTAS DE 9ª CATEGORÍA				Renta Actualizada		Rendimiento Actualizado	
Régimen Ganerario	796				799		802
Régimen Impo. Único 1ª Cat. g.	797				800		803
Régimen Art. 18 ter y Art. 107	798				801		804

RENTAS DE 10ª CATEGORÍA				Renta Actualizada		Rendimiento Actualizado	
Régimen Ganerario	796				799		802
Régimen Impo. Único 1ª Cat. g.	797				800		803
Régimen Art. 18 ter y Art. 107	798				801		804

RENTAS DE 11ª CATEGORÍA				Renta Actualizada		Rendimiento Actualizado	
Régimen Ganerario	796				799		802
Régimen Impo. Único 1ª Cat. g.	797				800		803
Régimen Art. 18 ter y Art. 107	798				801		804

RENTAS DE 12ª CATEGORÍA				Renta Actualizada		Rendimiento Actualizado	
Régimen Ganerario	796				799		802
Régimen Impo. Único 1ª Cat. g.	797				800		803
Régimen Art. 18 ter y Art. 107	798				801		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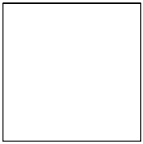


별지 3

칠레 무역협정 체결 현황



구분	체결대상국	체결시기	발효시기	비고
FTA	캐나다	1996.12.05	1997.07.05	
	멕시코	1998.04.17	1999.07.31	
	코스타리카	1999.10.18	2002.02.14	
	엘살바도르	1999.10.18	2002.07.01	
	EU	2002.11.18	2003.02.01	
	미국	2003.06.06	2004.01.01	
	한국	2003.02.15	2004.04.01	
	EFTA	2003.06.26	2004.12.01	
	중국	2005.11.18	2006.10.01	
	TPP P4	2005.07.18	2006.11.08	
	일본	2007.03.27	2007.09.03	
	파나마	2006.06.27	2008.03.07	
	온두라스	1999.10.18	2008.07.19	
페루	2006.08.22	2009.03.01		



	호주	2008.07.30	2009.03.06	
	콜롬비아	2006.11.27	2009.05.08	
	과테말라	2007.12.07	2010.03.23	
	터키	2009.07.14		국회비준 중
	니카라과			협상종료
	말레이시아			협상종료
	베트남			협상 중
부분적 FTA	인도	2006.03.08	2007.08.17	
	쿠바	1999.12.20	2008.07.27	
경제보완협정	베네수엘라	1993.04.02	1993.04.02	
	볼리비아	1993.04.06	1993.04.06	
	MERCOSUR	1996.07.25	1996.10.01	
	에콰도르	2008.03.20	2010.01.25	

-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Market)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 TPP P4(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 * MERCOSUR(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un del 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본 안내서는 우리기업이 칠레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칠레 세법 등을 2011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칠레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14

팩스번호 : 02-723-9976

원고작성 및 편집

국세청 : 국제협력담당관 김용준

행정사무관 전지현

세무조사관 조준구

서울지방국세청 : 세무조사관 박지상 (02-2076-5017)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397-1414)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